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10
----------	------

2014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2월 7일, 이진화·오봉수·金勇錫의원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4년 2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년 2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진화의원)

가. 제안이유

- 전통적 가치관의 상실, 현대적 생활방식의 확산, 산업기술의 발달 등으로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관리 및 육성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해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관련 법령에서 위

입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에 관한 5년 단위의 분야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국악의 보존·전승 및 육성, 공예의 현황조사·연구, 융합·전시 홍보 지원, 전통사찰의 설치 및 정비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전통문화 후계자 양성, 문화강좌, 학교 직장내 문화예술 단체 권장 및 지원 등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및 보급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 우수공예품 인증 및 표시부착, 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8조).
- 시장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전통문화” 전반에 진흥과 관련된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문화의 육성을 위해서 동 조례안을 제정함은 현대적 생활방식의 확산, 산업기술의 발달 등으로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조례안임.

- 현재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률안으로는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광림의원 2013.7.31.발의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중, 이하 “법률안”으로 칭함)이 있는 바, 그 내용으로는 전통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책수립,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전통문화산업 시설의 현대화 지원, 전통문화상품 표준화, 전통문화산업종사자 및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전통문화상품 인증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러한 법률안과 비교하여 동 조례안에서는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국악, 공예, 전통사찰 및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전통문화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우수공예품 인증제 시행, 전통사찰의 보조금 지급과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률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분야인 “전통사찰”과 “전통장소 활용 관광자원화”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나는 부분임.
- 동 조례안 중 검토가 필요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안 제2조(정의)에서 “전통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언급한 법률안의 정의와 비교하면, “전통사찰”을 전통문화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나는 부분임. “전통사찰”의 경우, “전통문화”에 포함시켜 정의할 수는 있으나, 사찰의 중무(宗務)적 성격과 별도의 법(「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향후 동 조례안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사료됨.

<전통문화의 정의 비교>

동 조례안	법률안
<p>1.“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p>	<p>1.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가. 전통문화예술 :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예술과 관련된 것</p> <p>나. 전통문화양식 : 전통건축, 전통음식, 전통의상, 전통공예, 전통무예, 전통한지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p>

- 다음으로 안 제5조(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및 지원대상)를 살펴보면, 그 분야를 국악, 공예, 전통사찰, 기타 전통문화 관련 사업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바, 전통문화예술 분야 중 “국악”만 규정할 뿐 전통미술 분야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통음식, 전통건축, 전통무예, 전통한지, 전통의상 등의 전통문화양식 분야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어 “전통문화”가 매우 한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이는 동 조례안이 현재 시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음에 기인함.

<p>안 제5조(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및 지원대상)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악의 보존·전승 및 육성, 국악관련 단체 및 국악행사·국악기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예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 전통과 현대공예의 조화로운 발전·융합 지원, 공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전시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소요비용 지원 등 전통사찰 보존·관리·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 또한 전통예술분야 중 “국악”과 “공예”의 경우만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합쳐 “전통예술”로 수정하여 폭 넓게 규정함이

필요함. 또한 “국악”의 경우, 현재 수립중인 마스터 플랜이 완성된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수정안 예시

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

1. 국악의 보존·전승 및 육성, 국악관련 단체 및 국악행사·국악기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예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 전통과 현대공예의 조화로운 발전·융합 지원, 공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전시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발전·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제3호의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대상에 기존의 지원대상 사업에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소요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된 바, 이는 전통사찰의 지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사찰측에서 측량비(대략 5백만원~1,000만원 소요)를 부담하여 왔으나, 보존구역의 지정이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공익성을 띠고 있어 이를 시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것임. 하지만 서울시에 위치한 전통사찰 58개소 중 50개 사찰은 이미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기에 지정을 새로 요청할 사찰이 8개소에 불과하여 연간 1~2건의 신청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자부담으로 지정된 50개의 사찰과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삭제하여 안 제10조의 내용과 합쳐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안 예시

안 제5조제3호

3.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소요비용 지원 등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 2.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안 제6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의 경우, 전통문화와 관련된 장소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마련된 조문으로, 현행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가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전지동 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붙임 2)과 같은 대규모의 관광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업은 “전통문화 육성”보다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공예 분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안 제8조에 “우수공예품의 인증” 제도의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통공예를 비롯한 “전통문화상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의거하여 인사동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특정 업소(골동품을 포함하여 고미술품점, 표구사, 필방, 지업사, 공예품점)의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공인과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문화상품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에서와 같이 전반적인 우수공예상품에 대한 인증제가 아니고 인사동문화지구에 위치한 특정업소의 상품에 대한 인증이므로 이 두 제도는 별개로 볼 수 있음.

하지만 금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공예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자”를 시작으로 시범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이와 별도로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서 종로구가 시행할 “전통문화상품 인증제”나 중앙정부의 “우수공예품 인증제”에 대한 효과도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 이러한 인증제를 곧바로 시행하기보다 그 시행의 효과를 지켜 본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특히 공예의 경우 전통예술의 한 장르로 육성할 필요성과 함께 공예 산업의 측면에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전통과 현대를 구분하지 않고 공예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증제에 대한 조문이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 조례안에 포함됨이 다소 어색한 측면도 있음. 이와 더불어 부산시와 성남시 등에서는 우수공예품 인증제를 포함한 공예품 개발과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¹⁾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향후 서울시에서도 공예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면, 공예 진흥과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독립된 조례로 입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음.

동 조례안

안 제8조(우수공예품의 인증)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예품에 대하여 우수공예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공예품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인증 가치를 잃었을 때
3.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생략)

4.“전통문화상품인증제”란 문화지구 내 고미술품점(골동품 포함), 표구사, 필방 및 지업사, 공예품점 등 우수한 기술력과 문화상품을 갖추고 있는 권장시설에 대한 공인화 및 차별적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문화지구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업소의 상품에 대한 인증제를 말한다.

1)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1.8.11. 제정)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3.11.13. 제정)

- 안 제9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와 안 제10조(보조금)은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의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임. 그러나 안 제10조의 경우, 법 제19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안 제5조제3호의 수정안으로 함께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임.

동 조례안

제9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그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를 둔다.

② 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 법 시행령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5조제1호에서 제3호를 수정하여 보다 폭 넓고 명확하게 지원 대상을 기술하고, 중복된 내용인 안 제5조제4호와 안 제10조를 삭제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10
----------	------------

제안년월일 : 2014년 2월 20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보다 폭 넓게 전통문화 지원대상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악”과 “공예”를 묶어 “전통예술”로 수정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소요비용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며, 조문 전반을 보다 명확하게 지원대상을 명시하도록 수정하고, 중복되어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수정의 주요골자

- 조문을 병합하고 수정함(안 제5조제1호에서 제3호).
- 중복된 조문을 삭제함(안 제5조제4호 및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및 지원대상)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발전·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안 제10조를 삭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및 지원 대상)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및 지원대상)(제정안과 같음)
1. 국악의 보존·전승 및 육성, 국악관련 단체 및 국악행사·국악기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발전·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예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 전통과 현대공예의 조화로운 발전·융합 지원, 공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전시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소요비용 지원 등 전통사찰 보존·관리·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3. (제정안 제4호와 같음)
제10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제>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 문화예술·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등을 위한 자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에 관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및 지원대상)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발전·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6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
2. 관련 전시·박물관 건립 사업
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전통문화의 교육 및 보급)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실시
2. 전통문화의 역사·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한 문화강좌 실시
3. 학교 및 직장 내 학생·직원 등의 정서와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단체 활동 권장 및 지원
4.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수공예품의 인증)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예품에 대하여 우수공예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공예품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인증 가치를 잃었을 때
3.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그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를 둔다.

② 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 법 시행령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